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기 상 산 업 진 흥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기상산업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6603호, 2019.11.26. 공포, 2020.5.27. 시행)됨에 따라,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사요건 신설(안 제9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00.~4. 00.) 결과,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체명, 소재지 등 기상산업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
2. 매출액, 수출입 현황 등 기상산업체의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
3. 근로자수, 인력채용 계획 등 기상산업체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
4. 기상산업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

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
1. 조사 목적, 내용, 방법,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
2. 조사 결과의 공표, 대표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사항
3. 조사기획, 표본설계,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상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사업체명, 소재지 등 기상산업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</u> <u>2. 매출액, 수출입 현황 등 기상산업체의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근로자수, 인력채용 계획 등 기상산업체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</u> <u>4. 기상산업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</u> <u>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</u> <u>1. 조사 목적, 내용, 방법,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조사 결과의 공표, 대표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사항</u>

3. 조사기획, 표본설계, 결과분석
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
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

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
조사를 기상산업 관련 전문성을
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
실시할 수 있다.

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
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
공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상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81-0848